

미래형모빌리티융합기술혁신센터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업지원 종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계명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.) 산학협력단에 설치한 미래형모빌리티융합기술혁신센터{이하 “센터”라 하며, 영문명은 “University Innovative Center for Future Mobility with Convergence Technology(UIC)”}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센터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각종 모빌리티 사업 기획, R&D, 인프라 구축 및 기업지원
2. 산학연과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
3.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인력양성 사업
4. 타 기관과의 학술적 교류와 정보교환
5. 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조직

제3조(구성) 센터에 미래형모빌리티사업부, 친환경자동차사업부를 둔다.

제4조(업무분담) ① 센터는 각 사업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.

② 미래형모빌리티사업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대학혁신기반센터(University Innovation Center, UIC) 사업
2. 플라잉카(Urban Air Mobility, UAM) 관련 사업
3.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사업

③ 친환경자동차사업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친환경 및 전자화자동차 관련 사업
2. 장비를 활용한 시험평가 및 기업지원 사업

제5조(조직) ①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1. 센터장 1명
2. 부장 2명

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임면) ① 센터장은 교원으로 총장이 임면한다.

② 부장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임무)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.

② 부장은 각 사업부의 업무를 담당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8조(설치) 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

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9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,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센터장, 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간사는 미래형모빌리티사업부장으로 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심의사항)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예산 및 결산
2. 사업계획
3.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기
4.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4장 프로젝트심의위원회

제12조(설치) 센터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도입의 효율 및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프로젝트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,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센터장, 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간사는 미래형모빌리티사업부장으로 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5조(심의사항)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프로젝트 과제 선정 및 예산 배정
2. 프로젝트 수행 결과 평가
3. 그 밖의 프로젝트 심의에 필요한 사항

제5장 재정

제16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우리 대학교 지원금
2.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
3. 산업계의 민간부담금
4. 그 밖의 수입

제17조(회계) 센터의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. 다만, 사업비 중 교비지원금의 집행은 우리 대학교 예산회계규정에 따른다.

제18조(예·결산과 사업) 센터장은 센터의 예산과 사업계획서, 결산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산학협력단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장 기 타

제19조(시설 및 장비의 이용) ①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센터장이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이용절차는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0조(보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산학협력단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6.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
7. 이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8. 이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.
9. 이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0. 이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전부개정)